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2032031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납품대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20320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5977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K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변론종결 2022. 11. 25.

판결선고 2023. 1.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5977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D 주식회사가 202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년 금 제1181호로 공탁한 359,216,331원 중 307,633,7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공무원)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12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를 “피고”로 고치고, 그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피고 C“를 모두 ”C“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 19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C”를 “C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2행의 “피고 B에 대하여:” 및 표 아래 제5행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의 “채권양도계약”을 “채권양도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안승훈, 판사 구태회

별지

1.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

채권자(양도인) 주식회사 C(H)

채무자 D 주식회사(I)

양수인(피고) B 주식회사(J)

2. 양도양수채권의 내용

주식회사 C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 금 359,216,331원 중 금
307,633,780원

3. 양도양수 일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일 2020. 5. 4.

채권양도양수통지발송일 2020. 5. 6.

채권양도양수통지도달일 2020. 5. 7. 끝.

